

2015.5.21

'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일부 개정 안내

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● 개정취지

- 「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」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
- 업체별·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
-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등

● 시행일자 : 15. 5. 18. (월)

2. 개정내용

1.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

□ 업체별·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

- 1)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**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**하고,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**5년으로 연장함.**
- 2)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**5년으로 연장**하되,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**최근 2년간**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**완화**함.

2015.5.21

2.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

-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
-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.

3.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

-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·고시할 수 있도록 함.

4. 한·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

- 「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」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한·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.